

성명문

2011년 6월 3일

형사재판(평성 22년 (와)제 73호)제1심 판결에 대한 검찰청의 [항소단념]결정을 받고

모르드개 모임(종교법인 소목자 훈련회로 인한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지원회)
대표加藤光一 (가토 고키치)

미토 지검 츠지우라 지부 소관의 준강간 피고사건(평성 22년 (와)제 73호)피고인 변 재창의 무죄 판결에 대해 미토 지방 검찰청은 ,디지털 사진증거를 뒤엎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수사를 뒷받침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항소단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이하의 이유로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유1)

본 사건이 [준강간] 피해인데 [강간]피해 같은 판단을 해, 피해자가 마치 피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부당한 판결의 근본적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잃은 것.

(이유2)

소송을 해도 아무 이익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위험을 무릅 쓰면서까지 피해소송을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진실을 찾아내는, 한층 더한 노력을 해야 할 기회를 잃은 것.

(이유3)

형사재판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어질 길이 닫히고, 이 사건으로 받은 심적 상처가 치유되어질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역전한 것에 의해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은 것.

(이유4)

본 사건발생의 배경에 있는 권위주의적인 교회 운영, 풍토의 해명에 파고들어가지 않았던 검찰의 입증방침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이유5)

디지털 사진의 알리바이증거로서의 평가법칙에 상급심에서 일정한 룰을 세울 기회를 잃은 것.

본 판결이 확정 된 것에 의해, 같은 종류의 범죄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기를 주저하고, 결과적으로 약자구제의 길이 닫혀버리는 것을 우려합니다. 이번의 사안은 디지털사진이 없었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이며, 이후, 같은 종류의 사건이 경찰에 상담이 들어올 경우 ,이번의 판결에 두려워 하지 말고, 가해자를 조사해 입건하도록 ,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모르테카이회는 이전 국제복음 그리스도교회의 성도였고, 복수의 피해자가 동경지검 민사부에 제소하고 있는 민사재판([성희롱민사재판]및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학대 민사재판]원고5명) 에 있어서 이후에도 피해자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승소를 받아내겠습니다.

이상.